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10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7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안 제7조)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함(안 제7조제5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u>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u>사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u>

1. ·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⑦ (생략)	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 ----- 다만, 제7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조1)는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 1) 「문학진흥법」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학진흥정책위원회²⁾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마련된 법 시행(2016년 2월 3일) 이후 2017년 2월 24일 최초로 구성되었고,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3년 2기 위원회³⁾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

-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2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임.

○ 개정안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 선임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⁴⁾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⁵⁾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일괄개정법률안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현행법 제5조⁶⁾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의결사항이 법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조직

4)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6) 「문학진흥법」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⁷⁾이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앞에서 설명한 2022년 정부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 시 비록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에 대한 지적,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동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 또한,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⁹⁾

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8)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 참조

그 외의 경우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를 때에도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를 미구성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사항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민간 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 구성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책 자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¹⁰⁾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문학계의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자문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에 따른 탄력적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9) 「문학진흥법」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전 위원회 위원의 활용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자문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임.

참 고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5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2	2	1	1	-	-	--
2021년	2	2	2	-	-	-	-
2022년	1	1	1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주) 2023년부터는 위원회 미구성

[참고 : 최근 3년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회차별 안건]

구 분	일 시	안 건
5차 (2기 위원회)	'22.4.13.	·(안건1)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안건2)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계획안 보고 ·(안건3) 2022년도 예산사업 보고

□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0년	25,000	25,000	-	-	8,100	8,100	-	-
2021년	25,000	25,000	-	-	13,100	13,100	-	-
2022년	25,000	25,000	-	-	2,708	2,708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